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60 발의연월일: 2020. 6. 4.

발 의 자: 강기윤 · 엄태영 · 박덕흠

구자근・윤영석・이 용

추경호 • 박성중 • 성일종

유경준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물가안정을 위하여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하고 필요한 경우 특정 물품의 공급·출고 등에 대한 긴급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함.

그런데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마스크 및 손소독제의 가격 폭등으로 인하여 이러한 물가안정장치의 실효성 확보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 였고 국민생활 및 국민경제의 안정이라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 여 처벌수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긴급수급조치를 위반하거나 매점매석 행위를 할 경우 처벌수준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으로써 물가안정을 위한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고자 함(안 제25조제1항 및 제26조).

법률 제 호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중 "2년"을 "5년"으로, "5천만원"을 "1억원"으로 한다.
제26조 중 "2년"을 "5년"으로, "5천만원"을 "1억원"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25조(벌칙) ① 제6조제1항에 따 | 제25조(벌칙) ① |
| 른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한 | |
| 자는 <u>2년</u> 이하의 징역 또는 <u>5</u> | <u>5년</u> <u>1</u> |
|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u>억원</u>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제26조(벌칙) 제7조를 위반하여 | 제26조(벌칙) |
| 매점매석 행위를 한 자는 <u>2년</u> | <u>5년</u> |
| 이하의 징역 또는 <u>5천만원</u> 이 | 1억원 |
| 하의 벌금에 처한다. | |